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426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나4266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9 선고 2021가단2263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진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10. 31.

판결 선고 2024. 12. 19.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9. 선고 2021가단226352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730,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7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5행의 "(부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1642호)"를 "(부산지방법원 2023년 금제164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면 제8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2.까지 49,000,000원을 반환하고 연 15%의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금인 35,474,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해석

1) 갑 제1호증(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4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 피고 스스로 인장을 제공하였다는 점, 4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시 피고는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12. 원고에게 '2020. 5. 12.까지 49,9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현금보관증의 내용,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2.까지 차용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총 49,000,000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대어관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위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위 약정상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즉 7,462,950원(= 4,406,557원 + 3,056,393원)¹⁾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42,212,950원(= 34,750,000원 + 7,46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공탁금의 충당

1)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23. 11. 21. 자 준비서면을 통해 거듭 피고의 공탁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잔존 채권액을 계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일부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탁금 34,750,000원은 앞서 인정한 원금 42,212,950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3. 3. 31.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18,267,220원²⁾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16,482,780원(= 34,750,000원 - 18,267,220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금은 25,730,170원(= 42,212,950원 - 16,482,780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3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 다음 날인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양소영

판사김혜림

1) ① $20,000,000\text{원} \times 336/366(2019. 6. 12.\text{부터 } 2020. 5. 12.\text{까지}) \times 24\% = 4,406,557\text{원}$

② $14,750,000\text{원} \times 316/366(2019. 7. 2.\text{부터 } 2020. 5. 12.\text{까지}) \times 24\% = 3,056,393\text{원}$

2) $42,212,950\text{원} \times [2+323/365(2020. 5. 13.\text{부터 } 2023. 3. 31.\text{까지})] \times 15\% = 18,267,220\text{원}$